



우리 정부역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정보들을 공유하고, 정책협의로 이를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할 필요가 크다.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구글세 입법의 필요성에 관하여

디지털세 도입논의시 고민해 볼 점



과세형평성 확립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동시에 방법론에 있어서 글로벌 테크컴퍼니들에게 원천지국 과세당국은 혜택에
따른 과세원칙(benefit to pay principle)에 입각한
과세정당성을 입증하고, 유능한 납세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오준석(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1. 초거대 글로벌기업들의 국내 세금회피수준

1. "구글세 논란만 요란... '모르쇠'에 속수무책", 지디넷코리아, 2018. 10. 31. 안희정 기자

2.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원잠식이슈", 국민대학교 이태희 교수, 2018. 9. 19.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미디어경영상학회 발표문

1. 유한회사형태의 설립을 통한 공시의무 면제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초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상황을 알거나 바로잡기 위해 해당기업대표들을 증인대에 불렀지만 대표들은 매출규모조차 모른다고 모른척하여 왔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매출정보는 내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구글세 논란을 의식하고 이를 회피하였다.¹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나이키, 코카콜라, 옥시, 오라클 등 국내에 진출한 초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유한회사형태로 설립되고 있는바, 유한회사이므로 매출과 납세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의 보고서를 통하여 "구글플레이 거래액"의 추정만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구글의 경우 글로벌 구글의 매출액을 통하여 보더라도 유튜브광고, 검색광고 등 검색광고로만 버는 금액이 구글플레이 금액보다 훨씬 많으므로 구글플레이 거래액 추정만

으로는 구글 매출액 산정의 한계가 있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산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구글세는 단지 디지털 기업들만의 문제가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회피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아래 유럽사례에서 보듯,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영세율인 조세회피처와의 관련성도 크지만, 국내에서는 매출액 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관련하여 외감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어 외국계 글로벌 회사들에 대하여도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으로 예상된다.

2. 추정되고 있는 회피된 조세액

국민대학교 이태희 교수의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원잠식 이슈"의 발표에 따르면, 구글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일부 한계가 있으나 구글이 한국에서 걷어들이는 수익에 대하여 공격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면 2015년 2.609조원, 2016년 2.815조원, 2017년 4.927조원으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면 2015년 1.777조원, 2016년 2.058조원, 2017년 3.21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 바 있다.² 이는 2016년 유사한 수준의 매출액을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특징되는 인터넷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은 디지털 플랫폼을 갖춘 디지털기업(digital companies, tech companies)들로 하여금 활발한 글로벌 경영활동에의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 및 시장 생태계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추진하는 연쇄반응이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투자(digital investment)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만들고 디지털 자산을 모은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 소비자가 접근할수록 디지털 자산들은 다양하게 변형 생성되어 상대방의 반응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경로와 접근법을 찾아낸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비용의 감소, 시장에서의 접근성 증대,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최적경로의 발굴은 디지털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WTO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은 1998년 제네바 장관급 회의(Ministerial Session)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 장벽, 그리고 초국적인 데이터자산의 이전을 주요의제로 하고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의 데이터가 무역의 대상이 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정보교류 및 무형의 데이터 자체가 판매가능한 글로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하의 디지털 무역에서는 경쟁의 본질이 디지털 플랫폼의 선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과 투자에 따른 국제조세는 거주지국에서의 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지국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는 어디에서 경제활동을 하던지, 기업의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을 적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기업이 진출한 원천지국에서는 원천지국의 인프라와 시장을 이용하고 받은 혜택에 따른 과세원칙(benefit to pay principle)을 적용하고자 하며, 과세대상으로서 단순한 문화나 예술차원에서 교류(communications)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업적 또는 경제적 목적의 거래(transactions)를 구분하고 있다.

있는 네이버와 비교할 때, 네이버는 당시 4200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였으나, 구글은 약 200억원 밖에 납부하지 않은 점에서 상당 수준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II. 유럽에서의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방지하려는 움직임

유럽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이 별도의 우회이익세나, 구글세 도입을 공론화하거나,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영국의 2015년 4월경 우회이익세 도입

영국은 구글세 논란을 공론화하여 세계최초로 법제화하였다. 2015년 4월경 우회이익세를 도입하여 초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로 빼돌리는 이익의 25%를 과세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구글에게 2016년 1억 3000만 파운드의 세금을 추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세 입법의 필요성에 관하여

디지털무역에 대해서 현행 과세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심에는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있다. 고정사업장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의 거래를 '상당히,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기 위한 설비 또는 물리적 존재 physical presence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단위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도움으로 O2O On-line to Off-line 거래를 만들어냄으로 물리적 거점의 존재없이도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사업장 기준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인 인적교류와 과세대상인 거래를 구분하는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EU 권역 내 일반 기업의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23.2%인 반면, 디지털 기업의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9.5%로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¹ 받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OECD는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의 공정한 과세권 확립을 위해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2. EU 집행위원회의 세금회피방지 패키지³

EU 집행위원회는 2016. 1.경 EU역내에서의 조세회피방지, 조세투명성제고, 공정경쟁장래를 위한 조세회피방지패키지를 발표하였는데, 이 패키지는 조세회피방지지침 제안, 행정부간 협조지침 리비전, 세금조약에 대한 권고, 효과적인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인 세금 부과계획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패키지 중 조세회피방지지침 제안 내용 중 6가지 방안⁴

이자비용 공제제한	일부 예외항목을 제외하고 이자비용은 최대 30까지 공제허용
기업출국세	기업이 거주지 이전 또는 지점 및 고정사업장과 본사와의 자산이전 시 소재지국 또는 원거주지국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안
스위치오버 제도	저세율국에 기반한 기업의 배당소득과 자회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제규정의 배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거래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3. "Anti Tax Avoidance Package", "European Commission, 2016. 1.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18. 4. 20. Vol. 18 No. 13
5. 주벨기에대사관, "금융, 재정정책, EU 집행위,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결정(애플관련)", 2017. 10. 5.

하고 디지털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하고자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장하여 과세연계점 nexus 개념을 활용한 가상고정사업장 Virtual P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상업적 거래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과거에는 서버를 통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서버 소재국을 고정사업장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입장을 취한 반면, BEPS Action 1에서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에서 벗어나 중요한 경제적 요소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에 기반하는 순소득 과세체계의 과세준거점 nexus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다시 디지털 기반요소 Digital factors, 수입기반 요소 Revenue-based factors, 사용자 기반요소 User-based factors로 구분하거나 혼합하여 과세연계점 형성과 고정사업장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적인 과세권의 배분과 과세당국의 세수이전을 초래하고 과세당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 합의의 도출을 통한 조세조약 개정 등 국제사회의 이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경제에

1.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and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March, 2018, p. 18.
2.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Article 4

CFC제도	저세율국에 위치한 비상장 자회사의 주요 소득을 모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제안
혼성불일치 과세제도	혼성체(hybrid entity)와 혼성상품(hybrid instrument)에 대한 국가간 상이한 조세규정에 기인한 이중비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천지국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과세소득에 미포함된 지금은 공제를 불허

3. 프랑스 정부 2016. 구글 파리지사에 압수수색 및 세무조사 실시

프랑스 정부도 2016년 5월 24일 미국의 인터넷 기업구글의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글로벌 다국적 회사의 세금회피에 대하여 이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4. EU 집행위원회의 아일랜드 정부 제소⁵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8월 30일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사에 대한 불법국가보조금(선별적 과세특혜) 130억 유로 환수결정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자, 유럽사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하였다.

5. EU 집행위원회의 룩셈부르크에 대한 세금부과 결정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0월경 아마존에 대한 특혜를 이유로 룩셈부르크에 총 2억 5천만 유로의 세금을 징수하라고 결정하였다.

6. 프랑스에서 애플 세금징수

프랑스에서는 애플이 프랑스에서 10여년간 체납한 세금 5억유로(약 64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 하였다.

7. EU 자체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의 무산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집행위를 통하여 구글, 페이스북의 거대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에 대상으로 역내에서 거둬들이는 매출 3%를 과세하려는 안이, EU 28개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경제재정이사회에서 표결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재정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 통과되기 위하여는 만장일치 승인이 요구 되었으나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반대표로 좌절되었다. EU에서의 입법은 좌절 되었으나 프랑스 등 각 국가별 입법은 별도로 본격화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논의의 고민해 볼 점

대한 임시대응책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다.

디지털서비스세는 디지털 소득의 과세연계점 nexus으로 '중요한 디지털존재(Significant digital presence)'를 도입하고 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 시키자는 것이다. 유럽연합내의 회원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통 과세체계를 완성하는데는 많은 과제가 있기때문에 임시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와 같은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디지털 존재'는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중요한 디지털 요소를 추가하여 과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한 것²으로 EU 회원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이 과세기간에 7,0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EU 회원국 내 활성 사용자 수서비스 사용자수가 과세기간에 10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EU 회원국 내 과세기간에 발생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3,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디지털세를 과세할

수 있다. 유럽연합회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EU회원국의 추가적인 법인세 수입을 연간 50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EU와 OECD BEPS 프로젝트의 접근방법 비교

	OECD BEPS 프로젝트	유럽연합회
연구주체	G20/OEC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적용대상	전 세계	유럽연합
연구목적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구조적인 해결책 도출	즉각적인 과세
대안적용	권고사항	강제사항
거세과점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디지털요소(Digital factors) 수입기반요소(Revenue-based factors) 사용자기반요소(User-based factors)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디지털 서비스 수익이 7,0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회원국 내 활성 사용자 수가 10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3,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III. OECD BEPS 액션플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럽 각국 정부의 세수확보가 어려워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OECD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2012년 6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관련된 종합해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Plan, BEPS 추진을 결정하였고, 국가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공동대응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국가별 납세자료를 공유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IV. 우리정부의 입장

우리 기획재정부는 2018년 10월 24일에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일명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에서 기획재정부 국경감사시 부총리의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 준비중, 다국적 IT 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 도입검토”에 대한 발언은, ① EU의 단기대책도입의 필요성은 신중히 검토하고, ② 영국 등의 우회수익세 도입은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있어 도입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면서 “부총리 발언은 OECD 등의 다국적 IT 기업 과세 문제 장기대책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OECD/G20 BEPS 이행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⁶

V. 조세회피방지정책과 소위 구글세와의 관계

우리 정부는 이미 2017년 G20 회의에서 국제적 정책공조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OECD의 BEPS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각 국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피난처를 통한 행위에 대하여 글로벌한 규제논의가 몇 년전부터 공론화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률안들이 입법화되기에는 관련 조약등 해결해야

구글세 입법의 필요성에 관하여

단·중기적 - 대안	형태세(Equalisation tax)부과
장기적 대안	가상의 고정사업장 디지털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를 부과하는 방법 형평부담금 (Equalisation levy)
	법인세 개혁을 통한 EU 공통 디지털 경제활동 과세체계 구축

해외 도입 사례

디지털세는 기본적으로 원천지국 과세당국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공평과세의 차원에서 확립³ 하는데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EU회원국 내에서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해외의 도입사례를 보면 EU, 이탈리아,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를 도입⁴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용역 계약 건수가 연간 3,000건 이상인 내국 또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가액에 비례하여 디지털 거래세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지만 서비스 제공받는 자가

거래가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형태인 거래세로 조세조약 대상이 아니며 2019년 1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연간 1억 9천만유로의 추가적인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의 일부를 과세하는 균등부과금(equality levy)을 부과하며,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광고를 위한 장소, 시설 등의 공급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논의시 과제

디지털기업과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세제도가 ‘구글세,’ ‘아마존세,’ ‘애플세’식의 특정 다국적기업의 다국적경영활동을 조세포탈이라고 예단하고 겨냥하여 운영되는 식으로 언론이 몰아가는 것은 합리적인 납세자의 국제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세수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는 없다.

3. 시장에서의 경쟁경쟁을 위해서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한다(level the playground)’는 것이 대전제이다.

4. 김재진, 유현욱, 홍민욱,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세법연구 18-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할 이슈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드러난 과세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중과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제도를 다시 손봐야 하는 것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실제 매출액이 공개되면서 구글세 공론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바 있다. 더 나아가 세법상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추가조치 등을 입법화함으로써,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회사들이 디지털 경제에 편승하여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OECD 및 G20차원에서 국제협력을 함께 진행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는 관련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는 전제로서 과세자료들을 글로벌하게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구글세”의 도입은, 좁게보면 유럽단위에서 추진하였던 디지털세로 이해되는 듯 하나, 넓게 보면 국제사회의 조세회피방지정책을 포괄하여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역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정보들을 공유하고, 정책협의로 이를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할 필요가 크다.

디지털세 도입논의시 고민해 볼 점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가치창출능력이지 조세부담 절감능력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디지털세를 도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과세대상의 범위에 따라 무차별조항^{Most Favored Nation:MFN}문제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내국법인에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하면 무차별조항 문제로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과세기준의 선정시 ‘중요한 디지털 존재SDP’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매출액, 플랫폼 이용자 수신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사업계약 건수 등이 제안되었으나 합리적 기준을 규정하기 어렵고 정보제공동의 등 행정적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과세율 산정의 어려움이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매출액에 과세하여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지 유럽연합의 한시적 조치를 따라서, 적정 과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넷째, 조세부담의 전가 가능성이다. 디지털 서비스 세의 경우 최종소득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이 거래금액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거주지국은 바꾸기가 어려운 반면에서 원천지국은 해외투자를 통해 선택하는 것이며, 변경할 수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자칫 거주지국의 국내기업을 응원하고 원천지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확립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동시에 방법론에 있어서 글로벌 테크컴퍼니들에게 원천지국 과세당국은 혜택에 따른 과세원칙(benefit to pay principle)에 입각한 과세정당성을 입증하고, 유능한 납세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실력이며, 시장은 실력 있는 정책당국을 신뢰하고 모인다. 우리사회가 실력이 아닌 강제력에 의존하여 이기겠다는 데에만 집착하면 결국은 유능하지 못한 납세자만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조심스런 것이고 결코 큰 목소리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